

시티오씨엘 8단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2-831-1141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5.12.09.)로부터 1년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5.11.21.(금)	26.01.26.(월)	26.02.02.(월)	26.02.05.(목)	26.02.09.(월)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26.(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10275**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21.(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560**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075.9096, 136.0030P**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6.02.02.(월)	26.02.05.(목)	26.02.09.(월)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87번길7)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5.12.09.)**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46, 7개동 총 1,349세대 중 잔여 36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5910275	01	075.9096	75	35	802	202, 402, 602, 1102, 2002, 2802, 3102, 3202, 3402, 3602, 3802, 3902
					804	302, 502, 702, 1602, 1802, 2102, 2202, 2602
					805	402, 502, 902, 1302, 2702, 3402, 4002, 4302
					806	202, 1202, 1402, 1602, 1702, 2302, 3302
	02	136.0030P	136P	1	803	4504
합 계				36	-	

■ 공급금액 표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총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 (60%)						잔금 (35%)	
										계약금1차	계약금2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총분양가				10%	10%	10%	10%	10%	10%
075.9096	75	35	2층	2	237,159,860	318,640,140	-	555,800,000	10,000,000	17,790,000	55,580,000	55,580,000	55,580,000	55,580,000	55,580,000	55,580,000	194,530,000
			3층	1	239,634,720	321,965,280	-	561,600,000	10,000,000	18,08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56,160,000	196,560,000
			4층	2	242,109,580	325,290,420	-	567,400,000	10,000,000	18,37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56,740,000	198,590,000
			5-10층	5	244,584,440	328,615,560	-	573,200,000	10,000,000	18,660,000	57,320,000	57,320,000	57,320,000	57,320,000	57,320,000	57,320,000	200,620,000
			11-20층	9	248,766,100	334,233,900	-	583,000,000	10,000,000	19,15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204,050,000
			21-30층	6	250,728,920	336,871,080	-	587,600,000	10,000,000	19,380,000	58,760,000	58,760,000	58,760,000	58,760,000	58,760,000	58,760,000	205,660,000
			31-40층	9	253,417,130	340,482,870	-	593,900,000	10,000,000	19,695,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207,865,000
			41층이상	1	255,934,660	343,865,340	-	599,800,000	10,000,000	19,99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59,980,000	209,930,000
136.0030P	136P	1	45-46층	1	539,815,000	725,192,500	72,492,500	1,337,500,000	10,000,000	56,875,000	133,750,000	133,750,000	133,750,000	133,750,000	133,750,000	133,750,000	468,125,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 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비 고
아파트 분양금액	신한은행	140-015-766360	코리아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 분양대금 중 계약금1차는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1차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801동 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8010203홍길동'으로 기재)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1차 수납 불가])
- ※ 분양대금의 지정된 계약금2차,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와 연동되는 가상계좌(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말함)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상기 납부계좌와 연동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 금(90%) (입주예정일)
75	17,000,000	1,700,000	15,300,000
136P	30,000,000	3,000,000	27,0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신한은행	140-015-766429	코리아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확인바랍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예시: 801동 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8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부탁드립니다. (예시: 801동 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8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및 납부금액

- 시티오씨엘 8단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5.11.21.)참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2.05.(목) ~ 2026.02.14.(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6.02.05.(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전자민원 인감증명서 불가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26.)"까지 설정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 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시 (본인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input type="radio"/>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input type="radio"/>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6.02.09.(월) 10:00~17:00
- 계약 체결 장소 : 시티오씨엘 8단지 견본주택(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87번길7)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 상기 당첨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자 등·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추후 일정 공개

※ 당첨자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선정 진행 시 별도 연락예정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p>사람은 제외)</p> <p>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p> <p>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p> <p>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p> <p>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p> <p>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5.11.21.) 및 당사 홈페이지(<https://cityocel8.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빌코니화장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인지세법 제1조 2항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50%)와 계약자(50%)가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공급계약서 체결 전까지 각각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구매한 정부 수입인지를 사업주체에게 확인받아하고, 사업주체는 구매한 정부 수입인지를 공급계약서와 함께 배부합니다.
-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합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발급 가능하며, 수입인지 구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 (☎1577-5500)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액

기재금액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면제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공급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사업주체가 인지세를 수납하거나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여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역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시행수탁사)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110111-2937831
시공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9층(한강로3가)	110111-6740008
	현대건설(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10111-0007909
	(주)포스코이앤씨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174611-0002979
시행위탁자	(주)디씨알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로 30, 450동 1층 상가 1-37호(학익동, 시티오씨엘 4단지)	120111-0464149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시 홈페이지(<https://cityociel8.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 (☎ 032-831-1141)

■ 견본주택 위치도

